

보증보험 가입 안내

보증기관 사정에 따라 가입가능 은행 등 상세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구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자금보증	서울보증보험(SG)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 가능은행	신한, 국민, 우리, 농협, 하나, 부산, 광주, 기업, 수협	국민, 우리, 신한,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광주, 농협, 경남, 제주, 수협	협약 은행 없음
보증료	연 0.115% ~ 0.154%	연 0.02% ~ 0.04%	연 0.192% ~ 0.218%
신청방법	공사 홈페이지 신청, 은행방문, 모바일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정 방문	은행방문	서울보증보험 지정 방문
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화문의	☎ 1566-9009	☎ 1688-8114	☎ 1670-7000

전세피해지원센터 안내

지원대상 전세계약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계약 피해자

지원내용 1. 전문가 무료 법률상담 및 법률대응

상담인력	상담내용 (예시)
공인중개사	계약 종료 후 대항력 유지, 최우선변제금액, 임대차계약 검토 등
법무사	지급명령, 경공매, 임차권등기명령, 명도철차 대응 등 법무절차
변호사	보증금반환 소송,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행위

2. 긴급 주거지원

다주택 악성채무자의 강제관리주택을 전세피해자에게
임시거처로 제공(6개월) - 임차료 70% 지원 * 관리비 개별부담

3. 기타지원

- 전세피해 심리상담 전세사기 등 피해자 대상 무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 (분기별)
-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 (추후시행) 등



사이트 바로가기

☎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02-6917-8119, 1533-8119

보라보라~
내 전세보증금 절대 지켜!!

용인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용인시에서는 청년 임차인의전 재산과 다른없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해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해준다구??

용인시 청년이면 가능이겠지??

신청일 기준 보증기간이
유료하면 지원가능하디??

역시 용인시 뉴류 감사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월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 보증금이 있는 월세계약 임차인도 가입가능

지원 대상 (1~4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면 가능)

- 1 용인시 거주 만18~39세 무주택 청년 (1983년생 ~ 2005년생까지, '23년 기준)
- 2 전·월세보증금 3억원 미만 주거용 주택 전·월세 계약 임차인
※ 신청일 기준, 보증서상 전세목적물 주소에 전입신고 되어있고, 임차인이 신청인과 동일한 경우 지원가능
-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가입일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 보증서의 보증기간이 유효하면 지원 가능.
아직 반환보증을 가입하지 못한 경우에도 빠른 시일 내에 가입 후, 신청일 기준 보증서 발급 및 보증료 납부 완료가 이루어지면 지원 가능.

4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 '22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으로 판정, 기혼자는 부부합산
- ※ '22년 1~12월까지 1년간 평균액과 '22년 12월 부과액 중 낮은 금액으로 판정 (22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으로 판정, 부부합산),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 '22년 1~12월까지 평균액과 '22년 12월 부과액 중 낮은 금액으로 판정
- ※ 소득판정 기준표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소득기준(원/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501,000	123,332	120,104	-
2인	5,868,000	206,291	220,611	209,473
3인	7,550,000	266,083	295,553	272,614
4인	9,218,000	334,652	369,311	350,228

※ 지원 제외대상

- 청년 본인 명의의 건물(주택),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2022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토지분) 과세여부로 확인 예정)
-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등록임대사업자로 가입되어 있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 그 밖에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30만원)

※ 실제 보증료 납부액 지원

신청방법



용인시청 홈페이지(www.yongin.go.kr) 온라인 신청 문의: 용인시청 청년담당관 ☎031-324-2761

용인시청 홈페이지 경로

- 분야별정보 > 복지 > 청년 > 청년지원
-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 신청하기 (신청하기 화면에서 제출서류 스캔하여 업로드)

사업 안내 및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제출서류

-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보증서 사본
- 2 보증료 납부 증빙서
※ ① 가입 보증서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 제외
※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또는 보증공사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통한 사진 제출가능
- 3 청년 명의 통장 사본
-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22년 1~12월(1년)고지금액 표시,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22년 1~12월까지 1년간 평균액과 '22년 12월 부과액 중 낮은 금액으로 판정
※ 기혼자일 경우 부부 모두 제출(부부합산 산정), 신청인 및 배우자 외 건강보험료 별도 합산하지 않음
※ 피부양자는 부양자 기준으로 발급하여 제출,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으로 판정
- 5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6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7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홈페이지 본 사업 안내 페이지 내, 다운가능) 작성 후 제출 시, ①~③ 서류만 제출, ④,⑤,⑥,⑦ 서류 제출 제외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시, 행정기관에서 ④,⑤,⑥,⑦ 직접 조회

•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스캔하여 업로드

